

보도자료

2010년 5월 18일(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
가. 네트워크기획보호과 허성욱과장(2710)

[보고안건]

가.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과장(2470)

나. 이용자보호과 이재범과장(2670)

2010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(첨부 참조)

- 통합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에 따라 기존 법령상에 인용되고 있는 소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,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·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[보고안건]

가.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

-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, 준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일정을 보고함

- 전체 일정은 연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
 - 시청점유율 산정 등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도 정비는 5월부터,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의견수렴은 6월부터 진행
 - 공식적인 일정은 8월초 「중편·보도PP 승인 기본계획(안)」을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개시하여, 8월말 「기본계획(안)」의결할 예정
 -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공고, 접수 및 승인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며, 이후의 세부 일정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

나. 2009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객관적 품질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G 이동전화, 초고속인터넷, 인터넷전화, 휴대인터넷(WiBro) 등 4개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'09. 9월부터 '10. 4월까지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

[첨부]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가. “한국정보보호진흥원→ 한국인터넷진흥원” 명칭 변경

- 한국정보보호진흥원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설립하는 법률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명칭 변경

나. 행정제재 처분(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) 기준 개선

-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가중·감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
 -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인 경우 정지기간을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음

다.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

- 과징금 부과기준인 ‘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’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시행령에서 명문화
-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(0.5%~0.9%)을 곱하여 산정
 - ※ 중대성의 기준 : ①고의·중과실 여부, ②영리 목적의 유무, ③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, ④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, ⑤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

- 위반행위의 기간, 횟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,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, 의무적 조정과징금,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절차를 거쳐 부과토록 규정

라.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

- 위반횟수(1~3회)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정함
-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, 위반자의 유형, 위반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함. 끝.